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(제18362호) 개정·공포 알림

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개정· 공포('21.7.27.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2. 해당 개정령은 '21.7.27.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제18362호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본부(52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관련협회

주무관 시무관 대결 2021. 7. 28. 식품안전정책 _{전결} 이종식 과장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8738

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_{/ www.mfds.go.kr} 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

전화번호 043-719-2016 팩스번호 043-719-2000 / beliebt8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